삼성생명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중증·희귀질한 등, 위기가정 의료지원사업-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삼성생명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 나. 사업목적: 4대 중증질환, 화상, 백혈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환아가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 사업기간: 2019. 01 ~ 사업종료 시
- 라.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및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의 환아
 - 1) 세부조건
 - 수급 및 차상위 가정
 - 소외계층 및 사각지대 환아 가정(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등)
 - 19세 이하(2019년 기준, 2001년생까지)
- 마. 지원금액: 1인 최대 1,000만원
- 바. 결과보고: 결과보고 양식 및 감사서신, 감사영상 제출

2. 지원항목

지원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용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화상	- 화상과 관련한 각종치료
	이식	- 조혈모세포· 간· 소장· 신장· 피부· 뼈 이식 등
수술비 및 치료비 ※ 외래치료비	일반질병	- 일반 내·외과 질환, 정형외과 질환(척추, 고관절 등) -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등
포함	치료 부대경비	- 교통비, 식비,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항목에 한하며 의료비의 30% 내에서 지원
	보장구 구입	치료에 필요한 휠체어, 보조기구 구입 등

※ 지원 제외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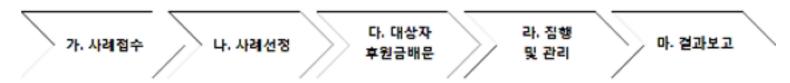
- 선 집행된 처리비용
 - (단, 선정된 아동에 한해 지원결정일로부터 세 달 전 발생한 비용 소급적용 가능)
- 진단 및 수술여부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진단비

3. 지원한도

지원항목	세부항목	1인 최대 지원한도	비고
수술비 및 치료비 ※ 외래치료비 포함	4대 중증질환		* 치료 부대경비 포함
	화상		
	이식	1,000만원	
	일반질병		
	보장구 구입		

※ 반납금 발생 시 지원금액의 5%내 생활비로 사용 가능

4. 지원절차



가. 사례접수

- ① 전국 지역본부를 통한 사례접수(홀수달 10일까지 공문접수)
- ② 삼성생명 FC를 통한 사례접수(홀수달 10일까지 온라인접수)
- 나. 1차 재단심의, 2차 삼성생명과 재단 공동 심의 후 최종선정
- 다. 후원금 배분
- 라. 지원기간동안 기준에 맞게 후원금 사용
 - ※ <u>삼성생명 FC가 추천한 사례가 선정된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인테이크 및 사례관리</u> 의뢰할 수 있음
- 마. 후원금 사용 완료 후 결과보고 서울지역본부에 전달

5. 신청서류

가. 국내아동

기본구비서류	지원항목	추가구비서류
- 사례지원 신청서 1부 [붙임2]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류 ¹ 1부	수술비 및 치료비	- 진단서 및 소견서 1부 - 치료비 추정서 1부 [이식비 신청 시] - 이식 승인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3]	보장구 구입비	- 보장구 처방전 1부 견적서 1부
[일반 가정인 경우] - 주거 확인서 1부 ² - 소득 증명서 1부 ³	특수 치료비	- 진단서 또는 심리검사 결과보고서 1부 - 치료비 추정서 1부. - 심리치료계획서 1부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6. 신청 시 유의사항

- 가. 대상자의 의료적 상황(지원필요성, 상태, 치료예후 등)을 중점적으로 가능한 자세하게 작성
- 나. 치료기관 및 보장구 구입업체에서 지원금 관리기관으로 청구 가능한 의료비에 한해 신청. 치료기관(병원)에서 청구되지 않은 약제비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대경비로 신청하도록 함. 단, 화상으로 인한 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되는

※ 신청 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지원항목	세부내용		
수술비 및 치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급여적용 된 금액으로 의료비 산출 (건강보험환자 기준으로 산출하여 반납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선택진료비(특진비)는 최대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당병원 사회사업실 또는 원무과 신청단계에서 논의		
보장구	국산용품으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수입용품 구입이 필요한 경우		
구입비	국산용품 기준으로 신청하고 차액은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급여비를 적극 활용하여 차액을 신청		
특수	 정부지원 우선하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치료비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발달재활바우처/교육청치료바우처 등) 12개월에 근거하여 산출		

7. 지원금 지급

- 가. 지원 결정된 지원금은 병원으로 직접 송금 원칙
- 나.클라이언트 및 병원 등 관련기관에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지원 금액, 지원내역, 용도 등을 공문으로 안내
- 다. 지원금은 지원결정일로부터 한 달 전 발생한 비용을 소급 적용가능하며, 지원결정 내용(질병)에 한해 지급가능
- 라. 지원금은 해당 치료기관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단, 외래 진료비는 치료기관의 청구가 어려울 경우 클라이언트 계좌로 송금하되 해당 클라이언 트 명의의 치료 영수증을 반드시 구비(간이 영수증 불가)
- 마. 치료 부대경비는 지원결정 시 지원항목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지원결정 금액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클라이언트 계좌로 직접 송금(부대경비에 한해 가능)
- 바. 치료기관(병원)에서 청구되지 않은 약제비는 지원이 불가하며, 별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의 30% 내 부대경비로 신청. 단, 화상으로 인한 약제비는 약국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지급 가능
- 사. 병실은 기준 병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 상급병실을 10일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고, 10일 이상 추가 사용한 상급 병실비는 지원하지 않음. 단,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할 경우 주치의의 진단서(진단서 내에 상급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 기재)와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 할 수 있음
- 아. 보장구구입비는 지급 시 기관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 병원에서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의료비 지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자. 클라이언트(또는 관련기관)에게 지원금 지급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의료지원금 사용 동의서<빈곤가정지원사업 서식 10호> 참고
 - 관련기관(치료기관 등) 지급관련서류 또는 영수증(외래진료비 영수증)
 - 송금 관련 증빙자료 (무통장 입금증 등).
- 차. 지원금은 지원결정내용(질병)에 한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지원 금용도변경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의료지원사업 업무지침 지원금 용도변경> 참고

8.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

가. 지원금

사용기간(1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 시 해당기관의

판단 하에 최대 1년에 한해 사용기간 연장 가능 나. 사용기간 연장 시에는 공문에 연장기간 및 사유를 작성

9. 종결 및 종결보고

가. 종결시점: 지원금 관리기간 경과, 지원금 집행 완료, 기타 사유 발생(대상자 사망 등) 시점

나. 제출기한: 종결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서울지역본부로 공문 제출

라. 제출양식

구분 참고사항		참고사항
필수	결과보고서	- 의료비 지원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붙임4] 양식 작성하여 제출 - 지출 증빙자료
	감사서신	- 자유양식(그림, 글 등) - 후원자명 [삼성생명] 필수 기재
선택 항목	감사영상	- 셀프카메라로 1~2분 내외 촬영(휴대폰 촬영 가능) - 지원아동 또는 부모님 감사 인사, 의료비 지원 전후 편집영상등 내용 선택 가능 - 영상 내용 중 [삼성생명] 감사 메시지 필수